

상명가족아동상담연구소 규정

<개정 2023.04.11.>

제 1 조 (명칭) 우리 연구소는 상명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상명가족아동상담 연구소(이하 “우리 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 우리 연구소는 가족 및 아동·청소년과 그와 관련된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,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가족 및 아동·청소년의 문제해결과 성장·적응을 지원하고, 가족·아동·청소년 분야의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이를 위한 이론적, 임상적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무소) 우리 연구소는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에 둔다. <개정 2023.04.11.>

제 4 조 (사업) 우리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다음과 같은 상담업무를 수행한다.

- 가. 가족상담
- 나. 아동상담(놀이치료, 미술치료 등)
- 다. 청소년상담
- 라. 개인상담
- 마. 집단상담
- 바.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
- 사. 기타 상담과 관련된 업무

2. 다음과 같은 상담교육 및 훈련업무를 수행한다.

- 가. 실습교육 및 임상훈련
- 나. 사례회의 및 지도감독 실시
- 다. 상담 및 교육관련 특강, 세미나 및 워크숍 주최
- 라. 상담 및 교육관련 특별 교육과정 설치
- 마. 기타 상담훈련 및 교육과 관련된 업무

3. 다음과 같은 연구업무를 수행한다.

- 가. 가족 및 아동·청소년 상담에 관한 이론적, 임상적 연구
- 나. 학술지 발행
- 다. 기타 연구와 관련된 업무

4. 기타 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기업, 사회단체 등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, 사업 참여

제 5 조 (소장) ① 우리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우리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

임명한다.

② 소장은 본 연구소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연구소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
제 6 조 (조직) ① 우리 연구소에는 [상담], [교육], [대외협력] 연구부를 두며, 각 연구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.

② 우리 연구소에는 전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일반연구원, 외부전문가,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③ 전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일반연구원 등의 임용은 우리 대학교 「연구원 임용 규정」에 따른다.

④ 연구소 사업수행을 위해 슈퍼바이저, 수련슈퍼바이저, 레지던트, 상담사 등을 둘 수 있으며, 이들에게는 연구소 수입 규모 안에서 소정의 금전적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3.04.11.>

⑤ 슈퍼바이저, 수련슈퍼바이저, 레지던트, 상담사의 자격기준과 대가, 참여자 선발 등은 매학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. <신설 2023.04.11.>

제 7 조 (운영위원회) ①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
제 8 조 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

제 9 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우리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인사에 관한 사항
2. 우리 연구소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3. 우리 연구소의 제 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11 조 (재정) 우리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하며, 연구소의 제반 지출은 다음의 수입액 규모 안에서 지출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. <개정 2023.04.11.>

1. 우리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상담, 교육 및 훈련 등 사업관련 수입
2. 기타 수입

제 12 조 (회계연도) 우리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13 조 (해산) 우리 연구소의 해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4 조 (재산의 귀속) 우리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된다.

제 15 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[본부칙신설 2023.04.11]